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6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6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7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7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8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8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8
III. 경영참고사항	9
1. 사업의 개요.....	9
가. 업계의 현황	9
나. 회사의 현황	14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8
☐ 재무제표의 승인.....	18
☐ 정관의 변경.....	71
☐ 이사의 선임.....	74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76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77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79
가. 제출 개요.....	79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79
※ 참고사항.....	8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년 03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파인
대 표 이 사 : 이창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전 화) 02-2189-8700
(홈페이지)<http://www.refi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박병양
(전 화) 02-2189-87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제2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2년 3월 28일(월) 오전 9: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지하1층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 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20기(제2021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정관 제2조(목적) 개정

· 제2-2호 : 정관 제28조(소집통지 및 공고) 개정

· 제2-3호 : 정관 제3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개정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기타 : 코로나19에 따른 우발상황 대처를 위한 위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급박한 총회의 소집일시, 장소 변경 등의 총회 소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4. 경영참고사항

1)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KB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refine.co.kr>)에도 등재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또는 서면)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6.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 및 정관 제37조 규정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오니, 주주님께서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첨부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인터넷), <https://evote.ksd.or.kr/m>(모바일)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년 3월 18일 9시 ~ 2022년 3월 27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주주 본인 : 주총참석장(1%이상의 주주만 지참), 본인 신분증

나. 대리인 : 주총참석장(1%이상의 주주만 지참),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중복주주 판별을 위하여 현장에서 육안 확인 후 즉시 삭제하며, 별도 수집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양식(상기 기재사항이 포함된 다른 양식도 무방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대리인에게

(주)리파인의 제20기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주주의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다.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 게재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예방을 위하여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디지털 온도계' 등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37.5℃ 이상)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2)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28조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주총참석장이 서면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분증과 위임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당사에 비치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권리주주임을 확인하겠습니다.
- 4) 본 주주총회 장소는 주차가 어려우므로 대중 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정기주주총회시 참석 주주님들께 별도의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1일
주식회사 리파인
대표이사 이 창 섭 (직인생략)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안내문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3 및 정관 제37조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님께서는 정기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별 참고서류를 참조하시어 다음의 서면투표용지에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인감을 날인 하신 후, 당사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전일 당사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후 도착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1. 우편이용 : (0617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4층 리파인 경영관리팀(덕명빌딩)
2. 팩스송부처 : 02-565-5398

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리파인(이하 "회사") 귀중

본인은 2022년 3월 28일 개최되는 회사의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의결권주식수	주	전화번호	

구 분	부의 안건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20기(제2021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제2조(목적) 개정		
		제2-2호: 제28조(소집통지 및 공고) 개정		
		제2-3호: 제37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개정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각 의안에 대하여 찬반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표결에 있어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 일

주주 : (인)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목 출석률 [87%]	황삼청 출석률 [93%]
			찬 반 여 부	
1	2021.01.08	제 1호 의안 :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2	2021.01.22	제 1호 의안 :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제 2호 의안 : 보상위원회 설치의 건	찬성	찬성
		제 3호 의안 :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건	찬성	찬성
3	2021.02.01	제 1호 의안 : 신주 발행의 건	찬성	찬성
4	2021.02.08	제 1호 의안 :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제 2호 의안 : 신주발행의 건	찬성	찬성
		제 3호 의안 : (주)네이텀 유가증권 매수의 건	찬성	찬성
5	2021.02.15	제 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6	2021.03.15	제 1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불참	불참
7	2021.03.15	제 1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제 2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8	2021.04.15	제 1호 의안 :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의 건	찬성	찬성
		제 2호 의안 :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제 3호 의안 : 조직개편의 건	찬성	찬성
9	2021.06.04	제 1호 의안 : CMO 및 CFO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제 2호 의안 :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건	찬성	찬성
		제 3호 의안 :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10	2021.07.09	제 1호 의안 : 복지제도규정 제정의 건	불참	찬성
11	2021.08.12	제 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 한 신주모집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21.10.25	제 1호 의안 : 사택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13	2021.11.01	제 1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채 결의 건	찬성	찬성
14	2021.11.23	제 1호 의안 : 자회사(주)네이텀) 해산 & 청산 승 인의 건	찬성	찬성
		제 2호 의안 : 복지제도 운영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15	2021.12.27	제 1호 의안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일부 해지 의 건	찬성	찬성
		제 2호 의안 : 자기주식 처분 결정의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보상위원회	황삼청 (위원장) 김완태 이옥	2021.01.22	제1호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제2호 : 보상위원회 간사 선정의 건	가결 가결
		2021.02.22	제1호 : 임직원 연봉책정	가결
		2021.03.15	제1호 : 이사의 보수한도 책정 제2호 : 감사의 보수한도 책정	가결 가결
		2021.04.15	제1호 : 성과관리제도 가이드라인 제정	가결
		2021.05.14	제1호 : 성과관리 기반 평가운영체계 채택의 건 (성과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	가결
		2021.06.04	보고사항 : '21년 하반기 성과관리제도 도입 실행(안) 외 2건	가결 가결
		2021.07.02	제1호 : 2021년 7월 성과급 지급의 건 외 1건, 보고사항 1건	가결 가결
		2021.09.03	제1호 : 명절(추석) 상여금 지급의 건	가결
		2021.12.27	제1호 : 2021년 12월 성과급 지급의 건 외 2건 (보고사항 : 성과관리제도 시범운영 및 향후 운영 방향)	가결 가결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2,000,000	54,611	27,306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포함 이사 전원에 대한 한도승인금액이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지급액은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기재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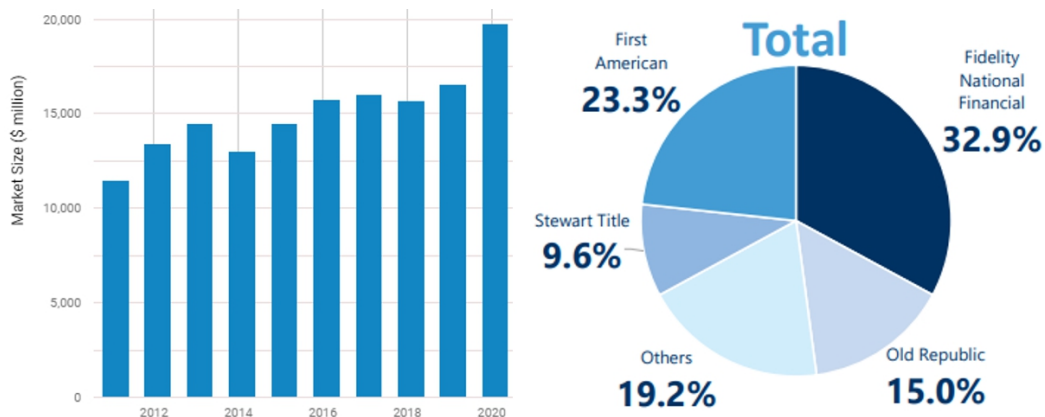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권리보험(Title Insurance)이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권리보험증권(Title Insurance Policy)이 발행될 당시 권리조사로 밝혀진 하자 이외의 다른 하자가 밝혀질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권리보험은 권리조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권리보험은 지난 19세기에 미국에서부터 처음 등장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 권리보험은 주로 부동산 매매 거래를 위한 소유권용 권리보험(Owner's Policy)과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용권리보험(Lender's Policy)으로 발전해왔는데, ALTA(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 미국 토지 소유권 협회)에서 밝히고 있는 미국 권리보험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197억달러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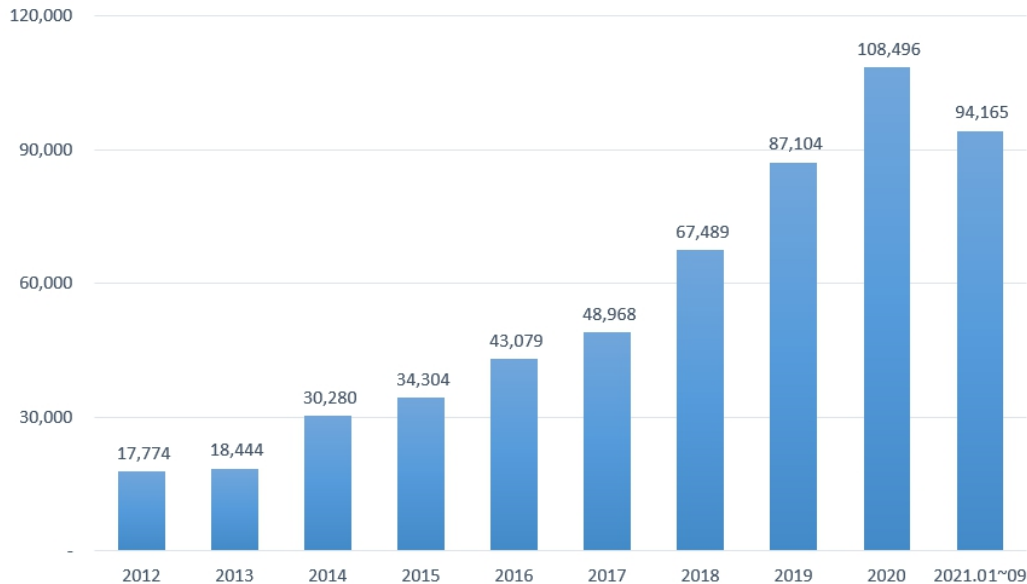


(출처: IBISWorld, Fidelity National Financial)

국내에서는 미국 권리보험사인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회사(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 한국지점에서 2001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권리보험으로 첫 사업허가를 받았고, 이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부동산권리보험 허가를 받아 2020년 기준 총 10개 회사가 사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리보험은 손해보험 중 특종보험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권원보험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현재는 권리보험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권리조사업 시장은 공식적인 통계가 작성된 바가 없으나, 권리보험 가입시 권리조사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권리보험료에 권리조사 요율을 적용하여 그 규모를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권리보험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험료 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 수준이므로 통상의 권리조사로율인 50~60%를 적용하였을 때, 권리조사 시장은 연간 약 500억원대 이상의 시장으로 추정되며, 이는 권리조사에 부대되는 업무를 제외한 순수 권리조사업무만의 시장 규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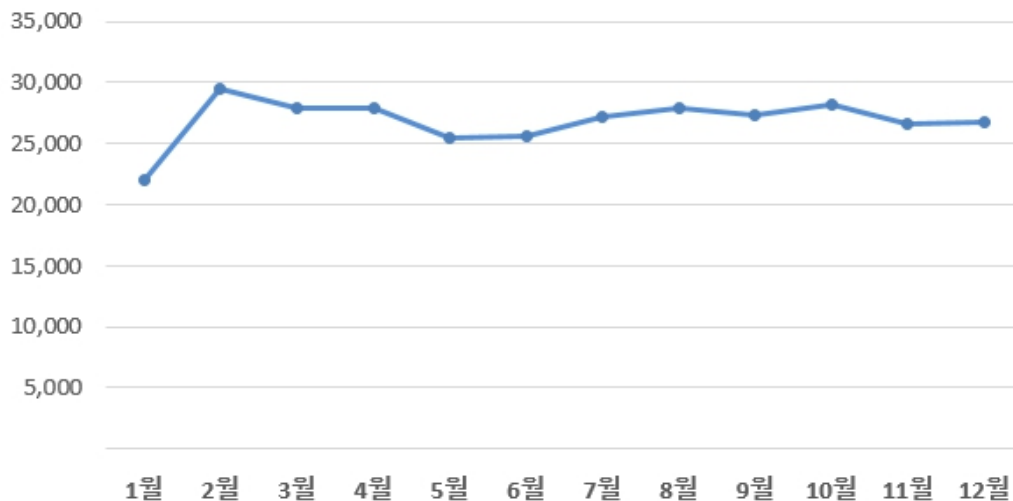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험료	17,774	18,444	30,280	34,304	43,079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9월
보험료	48,968	67,489	87,104	108,496	94,165

(출처: INCOS 보험통계조회서비스)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세대출 서비스는 매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권리조사 수행 후 고객사에 발송하는 보고서 기준으로 3개년(2019년~2021년) 평균을 보면 매 1월이 가장 적고 2월과 10월에 수행건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량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기를 맞이하기 전인 2월에 이사건이 많고 추석 전후인 10월에 이사건이 많은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리파인)

주택 담보대출 시장은 전세대출 시장과 통상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즉, 이사철인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과 추석 전후인 10월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 등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LTV 및 DTI 등 정부 규제에 따라 이상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대출총량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이 다소 위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품 수요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권리조사업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인·허가 등을 요하지는 않으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은 물론, 대출금융기관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서비스 기획 및 제공 시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헷지할 수 있고, 시스템 개발 요건은 최소화하면서, 대출금융기관의 상품 프로세스 안에 당사 서비스가 순차적 관계로 녹아들 수 있게 구성합니다. 당사의 혁신적, 선도적인 모델로 구성된 사업구조는 사업 참가자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 당사가 선점한 기관에 대해서는 동일 모델로 경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권리조사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에는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있으며, 관련 규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관련 내용	소관부처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무부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제 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6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관리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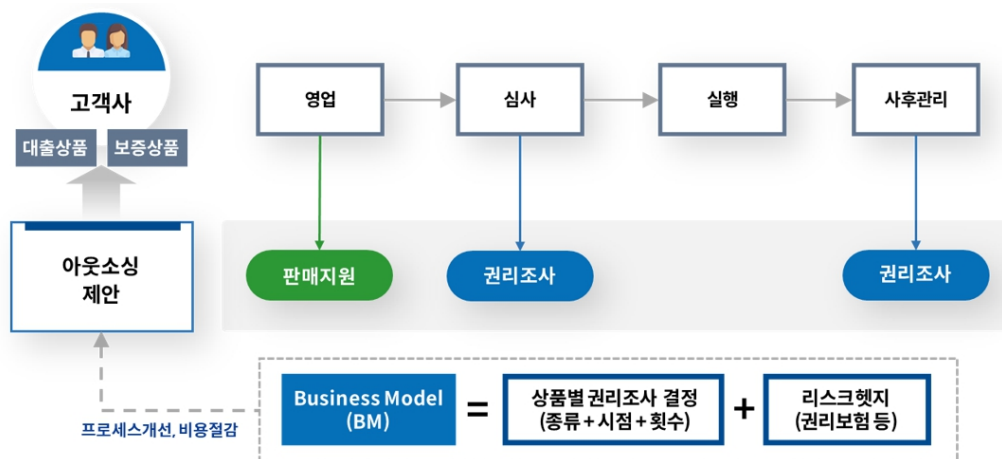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국내 최고의 권리조사 전문회사로서, 대출이나 보증의 금융상품에 권리조사업무를 접목하여 선도적인 BM(Business Model)을 창출하고 RPA에 기반하여 부동산 금융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최초로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입니다.

대출이나 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내부 심사 및 권리조사를 통해 신용·권리·시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후 대출이나 보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기적인 권리조사가 필요합니다.



(출처: 리파인)

당사는 이러한 흐름을 분석한 후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프로세스는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리스크까지 헷지할 수 있는 새로운 BM(Business Model)을 창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대출 및 보증상품 판매 과정에서 아웃소싱으로 필요한 권리조사 유형이 무엇인지, 시점은 언제인지, 몇번 조사할지, 리스크는 어떻게 헷지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BM을 창출하고 내부의 고도화된 RPA를 활용하여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 및 보증상품을 제안하여 B2B, B2G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각 기관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전세대출 서비스(200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2013년), 담보대출 서비스(2002년), 기타 서비스(오토론 등, 2010년)로 구분 됩니다. 나아가 당사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부동산 Data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여 작년 출시한 부동산 플랫폼인 '집파인'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각종 정보 제공,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지배적 단일사업부문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시의 요건을 갖춘 별도의 사업부문이 없으므로 재무정보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1) 시장 개척자로서 산업 내 경쟁자 미미

당사가 주 업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권리조사 업무는, 사업 모델을 직접 만들어 필요한 관계 회사들과 협력하여 시장을 만들어 나갔으므로 당사 이전에는 전문적인 사업자는 물론 현재와 같은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설립 및 서비스 개시 1년 후를 시작으로 차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주요 서비스별 계약 방식에 따른 경쟁 현황

각 서비스별 시장 형성 초기에는 권리보험사인 FATIC 및 KB손보와 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상품 판매를 원하는 대출 금융기관과 수의 계약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경부터 당사가 수익원 다각화를 위하여 제휴 권리보험사 확대 정책을 펼침에 따라 해당 상품 취급 권리보험사가 많아져 최근에는 대출 금융기관이 상품별 입찰 형태로 보험사(권리조사기관 심사 포함)를 선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서비스의 경우, 초년도에는 그 규모가 작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사업 주체가 공사인 관계로 현재는 1~3년 단위 조달청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A보증기관의 경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연속으로 당사가 서비스하고 있고, B보증기관의 경우 2020년 6월 첫 사업 입찰에 당사가 선정되어 3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사 주요 서비스 품목별 계약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입찰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여 경쟁 없는 신규 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품목	계약 방식
-----------	-------

전세대출 서비스	권리조사	대출금융기관 발주, 보험사-조사기관 컨소시엄 입찰
	통지관련 서비스	수요기관(A보증기관) 발주, 위탁기관 조달청 입찰
담보대출 서비스		대출금융기관 발주, 보험사-조사기관 컨소시엄 입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A보증기관 / B보증기관 : 위탁기관 조달청 입찰
	위탁 서비스	C보증기관 : 위탁기관 자체 입찰 (규모가 작아지면서 수의 계약 전)

3) 경쟁업체 현황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사			바이릿지			퍼스트씨치			리얼아이브이		
	2019연도 (제18기)	2020연도 (제19기)	2021연도 (제20기)	2019연도 (제18기)	2020연도 (제19기)	2021연도 (제20기)	2019연도 (제18기)	2020연도 (제19기)	2021연도 (제20기)	2019연도 (제18기)	2020연도 (제19기)	2021연도 (제20기)
설립일	2002.07.10			2003.07.21			2007.04.01			2010.06.08		
매출액	44,731	54,164	58,774	1,733	2,177	-	2,767	3,094	-	1,022	2,196	-

(출처: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3) 시장의 특성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거래 유형과 보호 주체에 따라 소유권용, 저당권용, 전세자금대출용, 임차권용의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성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부동산 권리보험 종류별 특징】

종류	특징	가입자(피보험자)
소유권용 권리보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데 있어 소유권에 관련된 하자, 거래 내부적 잠재 하자에 대한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전하게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상품	매매거래 매수인
저당권용 권리보험	문서의 위조나 사기 및 기표시점부터 등기 설정 기간 사이 다른 권리 설정 시 손해를 보상(Gap-Risk)하여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선기표(대출금 미리 지급)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상품	담보대출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써, 대출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하는 상품	전세대출 금융기관
임차권용 권리보험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손해 및 대항력 확보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보상해주며 부동산 임차권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상품	임대차거래 임차인

(출처: 리파인)

권리보험이 국내 처음 도입 당시에는 미국과 같이 소유권용으로 출발하였으나, 미국과 다른 국내 부동산 거래 시장 환경 영향으로 성장하지 못하다가 저당권용을 통해 성장발판을 마련하였고 이후 전세자금대출용을 통해 꽃을 피웠습니다.

요컨대, 국내 부동산 권리보험 시장은 소유권용 → 저당권용 → 전세자금대출용 → 임차권용 순서로 발전했으나, 점유비율로는 전세자금대출용 > 저당권용 > 임차권용 > 소유권용 순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유권용의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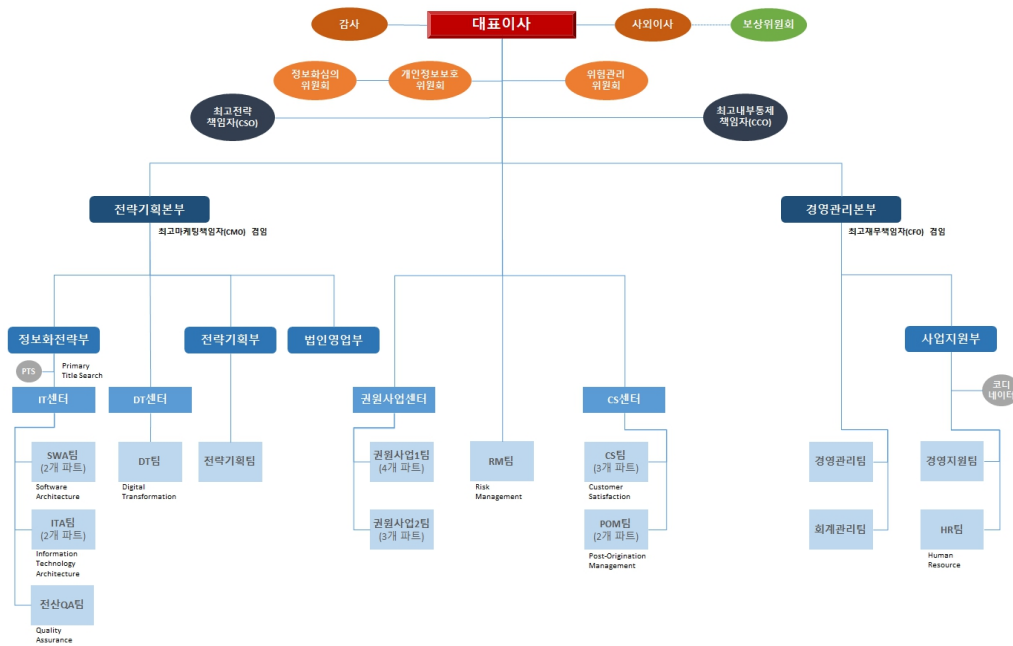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부동산 Data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여 작년 출시한 부동산 플랫폼인 '집파인'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각종 정보 제공,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전략과 로드맵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기존 부동산 플랫폼과 차별화된 부동산 권리 정보 기반의 심화된 부동산 정보제공/알림 플랫폼을 구축한 후 2단계인 부동산 SNS 플랫폼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개인, 법인, 공인중개사를 구분하여 각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개설과 SNS 기반 추천, 매칭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VR/AR 도입을 통해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고도화하여 사용성이 우수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리파인)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0기(제2021년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refine.co.kr> → IR/PR → 전자공고)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0(당)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제 20(당) 기말		제 19(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36,949,590,003		37,732,930,21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6,728,745,932		23,194,371,627	
2. 매출채권	6,599,736,888		6,943,619,386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822,814,814		6,744,701,663	
4. 기타유동금융자산	3,110,765,145		754,798,750	
5. 기타유동자산	305,350,922		95,438,787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82,176,302		-	
II. 비유동자산		10,212,014,578		11,690,838,607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45,024,068		4,477,918,177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9,985,000		149,985,000	
3. 관계기업투자	88,485,267		68,387,124	
4. 유형자산	1,570,189,374		918,651,603	
5. 무형자산	2,168,348,608		856,103,453	
6. 사용권자산	558,504,538		1,065,604,965	
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66,095,385		3,663,126,983	
8. 이연법인세자산	265,382,338		491,061,302	
자 산 총 계		147,161,604,581		49,423,768,820
부 채				
I. 유동부채		9,548,185,581		10,977,289,235
1. 계약부채	3,959,271,102		3,078,218,456	
2. 기타유동금융부채	2,047,950,309		1,398,030,673	
3. 유동성리스부채	320,607,256		557,071,514	
4. 기타유동부채	1,143,922,409		709,885,795	
5. 유동성충당부채	496,378,846		384,824,808	
6. 당기법인세부채	1,566,082,729		4,849,257,989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관련 부채	13,972,930		-	
II. 비유동부채		2,748,183,321		2,409,817,278
1. 비유동성계약부채	2,055,470,550		1,513,418,640	
2. 비유동성리스부채	184,452,916		428,821,902	
3. 순확정급여부채	403,849,327		362,235,762	
4. 종업원급여부채	61,963,212		-	
5. 장기충당부채	42,447,316		105,340,974	
부 채 총 계		12,296,368,902		13,387,106,513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34,865,235,679		36,036,662,307
I. 자본금	1,733,000,000		1,300,000,000	
II. 자본잉여금	88,173,410,304		-	
IV. 기타자본	(6,157,682,417)		-	
V. 이익잉여금	51,116,507,792		34,736,662,307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134,865,235,679		36,036,662,307
부채 및 자본총계		147,161,604,581		49,423,768,82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0(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리파인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 영업수익		58,773,815,123		54,163,512,623
II. 영업비용		37,768,282,352		33,930,592,021
III. 영업이익		21,005,532,771		20,232,920,602
1. 기타수익	30,403,864		34,328,598	
2. 기타비용	116,073,466		58,005,105	
3. 금융수익	478,518,575		339,983,263	
4. 금융비용	91,773,686		139,563,670	
5.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익	20,098,143		(38,050,316)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326,706,201		20,371,613,372
1. 계속영업법인세비용		4,390,981,084		4,534,286,995
V.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6,935,725,117		15,837,326,377
VI. 세후중단영업손익		(54,551,701)		229,857,114
VII. 당기순이익		16,881,173,416		16,067,183,491
VIII. 기타포괄손익		(501,327,931)		61,850,32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01,327,931)		61,850,324	
(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501,327,931)		61,070,32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327,600,000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		(326,820,000)	
IX. 당기총포괄손익		16,379,845,485		16,129,033,815
X. 주당손익				
1.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230		1,236
2. 기본 및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1,234		1,21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0(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리파인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총계
-----	-----	-------	------	----------	-------	----

				액		
2020.01.01(전기초)	1,300,000,000	-	-	(327,600,000)	19,000,228,492	19,972,628,49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6,067,183,491	16,067,183,491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61,070,324	61,070,3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327,600,000	-	327,6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326,820,000)	(326,820,000)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연차배당	-	-	-	-	(65,000,000)	(65,000,000)
2020.12.31(전기말)	1,300,000,000	-	-	-	34,736,662,307	36,036,662,307
2021.01.01(당기초)	1,300,000,000	-	-	-	34,736,662,307	36,036,662,30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6,881,173,416	16,881,173,416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501,327,931)	(501,327,931)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433,000,000	88,173,410,304	-	-	-	88,606,410,304
자기주식취득	-	-	(6,134,168,669)	-	-	(6,134,168,669)
자기주식처분손실	-	-	(23,513,748)	-	-	(23,513,748)
2021.12.31(당기말)	1,733,000,000	88,173,410,304	(6,157,682,417)	-	51,116,507,792	134,865,235,67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0(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리파인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98,919,629		13,231,695,360
1.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주석 29)	24,873,716,531		13,877,416,430	
2. 이자의 수취	287,125,827		89,301,751	
3. 배당금 수입	23,136,005		105,397,049	
4. 법인세 납부	(7,285,058,734)		(840,419,87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89,086,144)		(986,568,94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2,046,657,336		58,367,998,916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25,539,530,750		1,013,974,785	
단기저축보험의 처분	300,000,000		349,547,085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62,601,214,504		54,986,955,027	
장기저축보험의 처분	3,605,912,082		460,574,6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	-		1,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303,793,364	
무형자산의 처분	-		25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		963,124,000	
기타보증금의 감소	-		39,03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7,535,743,480)		(59,354,567,86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8,030,578,281)		(515,508,662)	
단기저축보험의 취득	(31,931,288)		(308,053,525)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65,879,556,681)		(55,074,973,098)	
장기저축보험의 취득	(153,796,133)		(872,640,00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31,200,000)		(7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680,000,000)		(1,103,124,000)	
사업결합으로인한 현금유출	-		(91,086,440)	
유형자산의 취득	(1,329,215,736)		(946,625,227)	
무형자산의 취득	(1,188,460,761)		(432,530,900)	
기타보증금의 증가	(11,004,600)		(9,326,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1,401,449,726		(438,436,56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8,606,410,304		-	
유상증자	88,606,410,304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204,960,578)		(438,436,560)	
리스부채의 상환	(549,496,078)		(373,436,560)	
배당금의 지급	-		(65,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6,655,464,5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93,811,283,211		11,806,689,85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3,194,371,627		11,387,681,772
VI.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현금및현금성자산		(276,908,906)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6,728,745,932		23,194,371,62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0(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9(당)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리파인과 그 종속기업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리파인(이하 "지배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

지배기업은 부동산권원보험 및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권원조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2002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10월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733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창섭	1,705,000	9.84%
이길재	1,737,564	10.03%
김완태	1,637,500	9.45%
황세은	150,000	0.87%
박병양	35,720	0.21%
기타 개인주주	12,064,216	69.60%
합 계	17,330,000	100.00%

(2) 종속기업의 현황

①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회사명	소재국가	결산일	당기말 지분율	전기말 지분율	업종
(주)네이텀	한국	12월 31일	100%	100%	권리보험조사

②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손실)	포괄손익
(주)네이텀	382,176	13,973	368,203	819,641	(69,466)	(69,466)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손실)	포괄손익
(주)네이텀	71,769	4,099	67,670	324,031	(43,546)	(43,546)

③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회사는 종속기업인 (주)네이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관련 부채, 관련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동 거래는 2022년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2.1.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1.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공정가치의 측정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방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금융상품 공정가치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로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로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개정 기준서는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개정 기준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예: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중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잉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③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회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⑥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회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⑦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최초 인식 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식 4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식 8,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식 4.(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시설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상표권	5~7년
특허권	5~7년

2.8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9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0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계약부채",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 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가)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나)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지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4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담보대출 실행 및 권리보험 인수를 위한 권리조사 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계약에서 ① 권리조사, ② 사후관리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연결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사후관리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리스

[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10년의 고정 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연장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잔존가치보증

연결회사는 잔존가치를 보증하는 리스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17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부문을 단일 부문으로 파악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18: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9: 충당부채 측정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8: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가정
- 주석 28: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refine.co.kr> → IR/PR → 전자공고)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20(당)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리파인

(단위 : 원)

과목	제 20(당) 기말		제 19(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36,935,617,073		37,663,536,223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6,728,745,932		23,155,458,067	
2. 매출채권	6,599,736,888		6,913,199,386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822,814,814		6,744,701,663	
4. 기타유동금융자산	3,110,765,145		754,798,750	
5. 기타유동자산	305,350,922		95,378,357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68,203,372		-	
II. 비유동자산		10,298,996,069		11,858,791,634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45,024,068		4,477,918,177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9,985,000		149,985,000	
3. 종속기업투자	-		130,000,000	
4. 관계기업투자	200,000,000		200,000,000	
5. 유형자산	1,570,189,374		915,805,137	
6. 무형자산	2,168,348,608		794,244,903	
7. 사용권자산	558,504,538		1,065,604,965	
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66,095,385		3,663,126,983	
9. 이연법인세자산	240,849,096		462,106,469	
자 산 총 계		147,234,613,142		49,522,327,857
부 채				
I. 유동부채		9,534,212,651		10,973,190,229
1. 계약부채	3,959,271,102		3,078,218,456	
2. 기타유동금융부채	2,047,950,309		1,395,389,087	
3. 유동성리스부채	320,607,256		557,071,514	
4. 기타유동부채	1,143,922,409		708,428,375	
5. 유동충당부채	496,378,846		384,824,808	
6. 당기법인세부채	1,566,082,729		4,849,257,989	

II. 비유동부채		2,748,183,321		2,409,817,278
1. 비유동계약부채	2,055,470,550		1,513,418,640	
2. 비유동성리스부채	184,452,916		428,821,902	
3. 순확정급여부채	403,849,327		362,235,762	
4. 장기종업원급여부채	61,963,212		-	
5. 장기충당부채	42,447,316		105,340,974	
부 채 총 계		12,282,395,972		13,383,007,507
자 본				
I. 자본금	1,733,000,000		1,300,000,000	
II. 자본잉여금	88,173,410,304		-	
III. 기타자본	(6,157,682,417)		-	
IV. 이익잉여금	51,203,489,283		34,839,320,350	
자 본 총 계		134,952,217,170		36,139,320,350
부채 및 자본총계		147,234,613,142		49,522,327,85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0(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리파인

(단위 : 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 영업수익		58,773,815,123		54,163,512,623
II. 영업비용		37,768,282,352		33,930,592,021
III. 영업이익		21,005,532,771		20,232,920,602
1. 기타수익	30,403,864		34,328,598	
2. 기타비용	54,214,916		58,005,105	
3. 금융수익	478,518,575		339,983,263	
4. 금융비용	91,773,686		139,563,670	
5.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익	(131,796,628)		218,693,608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236,669,980		20,628,357,296
1. 법인세비용		4,371,173,116		4,590,770,659
V. 당기순이익		16,865,496,864		16,037,586,637
VI. 기타포괄손익		(501,327,931)		61,850,32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01,327,931)		61,850,324	
(1)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501,327,931)		61,070,324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327,600,000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익	-		(326,820,000)	
VII. 당기총포괄손익		16,364,168,933		16,099,436,961
VIII. 주당손익				
1. 기본주당이익		1,229		1,234

2. 회석주당이익		1,229		1,234
-----------	--	-------	--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0(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리파인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 액	이익잉여금	총계
2020.01.01 (전기초)	1,300,000,000	-	-	(327,600,000)	19,132,483,389	20,104,883,38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6,037,586,637	16,037,586,637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61,070,324	61,070,3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327,600,000	-	327,6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326,820,000)	(326,820,000)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연차배당	-	-	-	-	(65,000,000)	(65,000,000)
2020.12.31(전기말)	1,300,000,000	-	-	-	34,839,320,350	36,139,320,350
2021.01.01(당기초)	1,300,000,000	-	-	-	34,839,320,350	36,139,320,35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6,865,496,864	16,865,496,864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501,327,931)	(501,327,931)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유상증자	433,000,000	88,173,410,304	-	-	-	88,606,410,304
자기주식	-	-	(6,134,168,669)	-	-	(6,134,168,669)
자기주식처분손실	-	-	(23,513,748)	-	-	(23,513,748)
2021.12.31(당기말)	1,733,000,000	88,173,410,304	(6,157,682,417)	-	51,203,489,283	134,952,217,17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20(당) 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9(전) 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리파인

(단위 : 원)

과 목	제 20(당) 기		제 19(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002,135,073		13,155,409,360
1.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주식 29)	24,976,931,975		13,801,130,430	

2. 이자의 수취	287,125,827		89,301,751	
3. 배당금 수입	23,136,005		105,397,049	
4. 법인세 납부	(7,285,058,734)		(840,419,87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30,296,934)		4,050,803,49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2,046,657,336		63,444,284,916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25,539,530,750		1,013,974,785	
단기저축보험의 처분	300,000,000		349,547,085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62,601,214,504		54,986,955,027	
단기대여금의 회수	-		76,286,000	
장기저축보험의 처분	3,605,912,082		460,574,655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5,0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	-		1,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303,793,364	
무형자산의 처분	-		25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		963,124,000	
기타보증금의 감소	-		39,03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7,876,954,270)		(59,393,481,42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8,030,578,281)		(515,508,662)	
단기저축보험의 취득	(31,931,288)		(308,053,525)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65,879,556,681)		(55,074,973,098)	
장기저축보험의 취득	(153,796,133)		(872,640,00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31,200,000)		(7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655,000,000)		(1,103,124,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70,000,000)		(13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325,426,526)		(946,625,227)	
무형자산의 취득	(1,188,460,761)		(432,530,900)	
기타보증금의 증가	(11,004,600)		(9,326,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1,401,449,726		(438,436,56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8,606,410,304		-	
유상증자	88,606,410,304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204,960,578)		(438,436,560)	
리스부채의 상환	(549,496,078)		(373,436,560)	
배당금의 지급	-		(65,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6,655,464,5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93,573,287,865		16,767,776,29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3,155,458,067		6,387,681,772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6,728,745,932		23,155,458,06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20(당)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제 19(전)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2년 03월 28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2021년 03월 29일

(단위: 원)

과 목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50,994,189,283		34,630,020,35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4,630,020,350		18,858,183,389	
2.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501,327,931)		61,070,324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326,820,000)	
4. 당기순이익	16,865,496,864		16,037,586,637	
합 계		50,994,189,283		34,630,020,35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0,994,189,283		34,630,020,350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0(당)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9(전)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리파인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리파인(이하 "당사")은 부동산권원보험 및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권원조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2002년 7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0월 29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은 1,733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창섭	1,705,000	9.84%
이길재	1,737,564	10.03%
김완태	1,637,500	9.45%
황세은	150,000	0.87%
박병양	35,720	0.21%
기타 개인주주	12,064,216	69.60%
합계	17,33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2.1.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1.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공정가치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간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금융상품 공정가치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개혁(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없이 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
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
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
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
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의무 공시대상 회계정책 정보
개정 기준서는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
를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
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
고,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
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개정 기준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예: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 최초 인식)에 이연법인
세 자산·부채가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
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
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
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
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
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는 매 보고기간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
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회사는종속기업, 관계

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표시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석 4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8,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3)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 년
시설장치	5 년
차량운반구	5 년
비품	5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상표권	5~7년
특허권	5~7년

2.8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가능(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9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0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계약부채",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 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나)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 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4 수익인식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부동산 거래, 부동산담보대출 실행 및 권리보험 인수를 위한 권리조사 용역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① 권리조사, ② 사후관리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사후관리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15 리스

[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이용자 회계정책]

회사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10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변동리스료

회사는 변동리스료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연장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잔존가치보증

회사는 잔존가치를 보증하는 리스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17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 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영업부문을 단일 부문으로 파악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에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18: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9: 충당부채 측정 -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8: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가정
- 주석 28: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refine.co.kr> → IR/PR → 전자공고)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신 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4.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25.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7. 통신판매업 28.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및 온라인교육업 29. 이사, 인테리어, 도배 및 전자제품대여 중개 서비스업 30.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사업다각화에 따른 목적사업 추가(신규)
4. 전자상거래업 6. 부동산 시장조사 기타 조사연구 업무 1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4. 자금대여업 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전자상거래업 및 전자금융업 6. 연구개발업 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공급업 15. 여신 금융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조문번호 수정 및 사업목적 구체화

제2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	---	--------------------------

제37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8조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 제5항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관련 특례조항과의 상충가능성을 제거하고자 동 조문 삭제
<신 설>	부 칙 본 정관은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추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병양	1974.10.25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병양	(주)리파인 경영관리본부장 겸 최고재무책임자 (CFO)	2008~2018 2019~2020 2020~현재	도이치증권(주) 상무 아스트라자산운용(주) 전무 (주)리파인 경영관리본부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병양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후보자의 이력, 당사와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박병양 후보는 다수의 주요 국내/해외 금융기관에서 약 20년간 근무하고,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재무, 회계, 자금 관리와 조직관리, IR/PR 등의 다방면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관리본부를 총괄하여 관리하였으며,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 및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평가 및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고자: 박 병 양 (서명 또는 날인)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401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사내이사는 4명이나, 제20기 사업연도 중 중도퇴임한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7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2년 03월 18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는 2022년 3월 11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2022년 3월 11일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refine.co.kr> → IR/PR → 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3월 18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refine.co.kr> → IR/PR → 전자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 입장전 체온계 등으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질병 예방을 위하여 주주총회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진행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COVID-19)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